제2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

#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

2023. 4. 18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 시·교 통 위 원 회

#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도시·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행정의 문제를 적발·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## 1. 관련 근거

- □「지방자치법」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- 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1조 ~ 제54조
- □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- 2. 감사기간: 2023. 6. 12.(월) ~ 6. 20.(화) (9일간)
- 3.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
  - □ 대상기관: 서울특별시 강서구청,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
    - 도시관리국: 주택과, 도시디자인과, 도시계획과, 도시재생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부동산정보과
    - 안전교통국: 안전관리과, 건설관리과, 도로과, 물관리과, 교통행정과, 주차관리과
    - 원도심활성화추진단
    -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
    - 동주민센터: 염창동, 등촌제1동, 등촌제2동, 화곡본동, 화곡제4동, 화곡제6동, 가양제3동
  - □ **대상사무**: 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도시·교통위원회 및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

# 4. 감사위원회 편성

구 분	도시·교통위원회	사무보조직원		
위 원 장	이종숙	• 수석전문위원: 배금택		
부위원장	전철규	· 전 문 위 원: 박현철 · 직 원: 김미선		
위 원	박성호,이충현,조기만,김민석,홍재희, 정재봉	·속 기 사: 이옥례		

# 5. 감사일정 및 장소

7 8	감 사 일 정		CII AL 2 I 7L	ᆉᆡ자ᄉ	ш ¬
구 분	일 자	개회시간	대상기관	감사장소	비고
도시·교통 위 원 회	2023. 6. 12.(월)	10:00	도시관리국	강서구의회 제3회의실	
	2023. 6. 13.(화)	10:00	도시관리국	"	
	2023. 6. 14.(수)	10:00	안전교통국	"	
	2023. 6. 15.(목)	10:00	안전교통국	"	
	2023. 6. 16.(금)	10:00	원도심활성화추진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	"	
	2023. 6. 19.(월)	14:00	동주민센터	"	10:00 ~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감사
	2023. 6. 20.(화)	10:00	동주민센터	"	

<sup>※</sup>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6. 주요 감사사항

- □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사항
- □ 2022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집행 현황
- □ 2022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
- 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- □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
- □ 기타 필요한 사항

#### 7.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

- □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
- □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
- □ 감사위원회(도시·교통위원회)의 요구자료
- □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

## 8. 세부 감사요령

#### 가. 감사방법

- 감사는 소관부서에 감사자료 제출요구, 업무보고 청취, 서류감사, 질의·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
-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의 요구,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실시

### 나. 감사자료 제출요구

○ 감사위원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출 요구

#### 다. 증인 등의 출석요구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적용
  -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(제8조)
    - ·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,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·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
  - 과태료(제9조)
    - ·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  - 증인의 보호(제11조)
    - · 의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,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

### 라. 감사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포(위원장)
- 위원장 인사
- 증인선서(관계공무원)
- 업무보고 청취
-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
- 질의 및 답변
- 감사결과의견서 작성
- 감사종료 선언

#### 마. 유의사항

- 감사의 한계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8조)
  -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됨
-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9조)
  -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
- 감사 주의 의무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0조)
  - 감사위원이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
  -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
- 감사 공개원칙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1조)
  - 감사는 공개함. 다만,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행정사무감사 방법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6조)
  - 현지확인, 서류제출의 요구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·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, 서류제출 요구일,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

### 9. 감사결과처리

#### 가. 감사결과의견서 작성

○ 감사위원은 도시관리국, 안전교통국, 원도심활성화추진단, 시설관리 공단, 동주민센터 감사종료 후 배부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제출

#### 나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○ 위원장은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 채택

#### 다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

○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·기간·감사대상기관(부서)·경과 등 일반사항과 요구사항(시정·개선사항, 수범사례 등)의 감사의견을 포함 하여 작성

### 라. 감사결과보고

○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

## 붙임 1. 선서서 1부.

2. 감사결과 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[붙임1]

# 선 서 서

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·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6조제6항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제8조 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 및 직위:

증 인: (인)

## [붙임2]

# 감 사 결 과 의 견 서

도시·교통위원회

(인)

감사대상부서: 감사위원:

구 분	내 <del>용</del>	비고
요구사항		